

#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서울·인천·경기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

서울·인천·경기

##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 서울·인천·경기

발행일 : 2025년 09월 12일

지은이 : 한의정

기획자 : 윤강인

디자인 : 김지민, 한의정

감수자 : 임종균, 김종일

발행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7층

대표전화 : 1577-4129

팩스 : 02-6919-1475

홈페이지 : [www.15774129.go.kr](http://www.15774129.go.kr)

이메일 : esky001@kfcpi.or.kr

전자책 : 9791196330071  
ISBN :

종이책 : 9791199489622  
ISBN :



**불법 복제, 무단 전제, 유포, 공유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Contents

#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서울·인천·경기



## 공영장례 투아보기

- 수행 방식 및 지원 예시
- 공영장례 흐름도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확인 방법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본청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강동구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 본청
- 연수구
- 강화군
- 남동구
- 옹진군
- 부평구
- 중구
- 계양구
- 동구
- 서구
- 미추홀구

## 경기도 공영장례 조례

- 본청
- 광명시
- 수원시
- 하남시
- 고양시
- 오산시
- 용인시
- 양주시
- 성남시
- 이천시
- 부천시
- 구리시
- 화성시
- 안성시
- 안산시
- 포천시
- 남양주시
- 의왕시
- 안양시
- 여주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시흥시
- 과천시
- 파주시
- 양평군
- 의정부시
- 가평군
- 김포시
- 연천군
- 광주시

# 공연장례 를 아보기

# 공영장례 돌아보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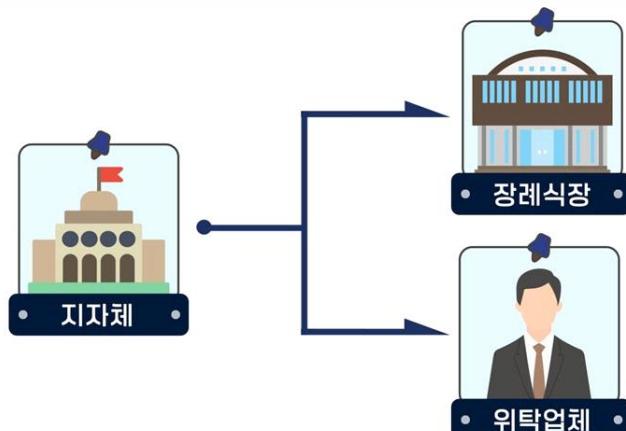
지자체 조례



공영장례란 가족 해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가 사망했을 때, 시신의 안치부터 염습·입관, 화장과 봉안까지 장사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 지원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가족과 지인이 애도할 수 있도록 공공(公共)빈소를 마련하여 장례 의식까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지역의 장사 시설 현황, 공설 장사 시설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여건에 맞는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영장례 조례 확인 방법]을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장례 수행 방식 및 지원 예시



현재 공영장례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 혹은 의전업체 및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예시



- 장례식장 빙소 또는 제례실 마련
- 근조바구니, 위패, 향, 초, 국화, 병풍 등 장례 의식에 필요한 자원 산정
- 기부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

장례의식  
준비 및 시행      시신 운구      조문객 응대      현장 정리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자원(주관자, 상주, 행사 인력 등)은 역할별로 확보하고, 관내 복지기관 및 종교기관,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자체 인력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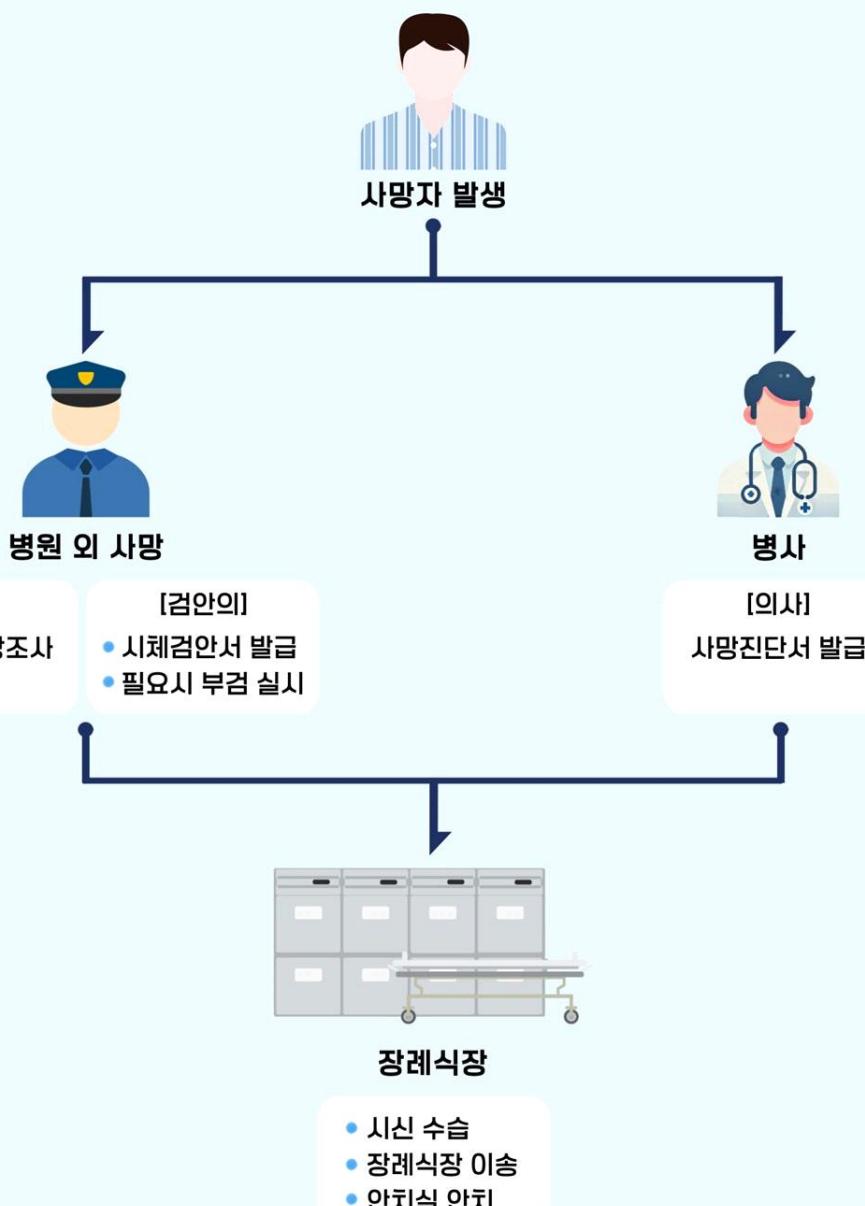
이외에도 지자체별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고인이 생전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 각 종교별 장례방식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장례 방식의 경우, 임종을 지킬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의 경우에는 별도 장례절차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지인,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들마저도 그를 충분히 애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공영장례 절차 흐름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 내부지침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영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저소득 장례지원의 경우 절차 진행 과정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장례 흐름도

1단계



## 2단계



### 연고자 파악



#### [경찰]

고인 범죄 여부, 변사자 신원,  
유족 등 관계자 확인 후  
무연고자인 경우 지자체 이관

#### [장례식장 담당자]

연고자 연락 불가 시  
지자체 연고자 파악 요청



### 지자체 담당자

연고자  
확인시



- 사망자 서류 등 각종 서류 확인
- 시신 인수 통보 요청 공문 발송

#### 연고자에게 시신 인계



#### 연고자 없음

공적 서류상 연고  
관계의 사람 부존재



#### 연고자 알 수 없음

고인 신원 파악 불가  
연고자 확인 불가



#### 시신 처리 위임

연고자가  
시신처리위임서 제출



#### 시신 인수 기피

연고자가 시신 인수  
통보 받은 후  
14일간 무응답



#### 의사 확인 불가

연고자 연락두절,  
주소지 불명 등  
의사 확인 불가



## 3단계



### 지자체 담당자

-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
- 위탁업체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등  
공영장례 절차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장례지원 요청 공문  
발송

#### 4단계



장례식장 또는 위탁업체

- [화장예약] e하늘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 화장예약
- [염습 및 입관]
- [장례의식 진행]
  1. 빈소 설치 : 장례식장 혹은 전용 빈소 준비 및 상차림
  2. 장례의식 : 고인 소개 및 장례의식 진행
  3. 조문 및 현화 : 참여자 조문 및 현화
  4. 추도 행사 : 고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추모의 글 작성
- [발인 및 화장시설로 운구]



화장시설



봉안시설

화장 진행

5년 봉안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 기피한 경우  
산분장 혹은 자연장 진행

#### 5단계



장례식장 또는 위탁업체



지자체 담당자

##### [결과 보고]

무연고 시신 전신 사진, 염습 사진, 입관 사진과 장례 중  
취득한 화장증명서(혹은 매장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결과 보고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진행
- [연고자에게 통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경우 결과 통보
- [관리대장 기록 및 보고]
- [사망신고 및 유류금품 정리]  
공영장례 절차 완료 시 직권으로 사망신고  
무연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시신  
처리 비용 출당, 부족액은 매각대금으로 출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확인 방법



본 도서에 삽입된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하단부에는 [조례 바로가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시, 각 조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표시되므로, 링크 클릭 후 조례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 확인이 어렵다면!

-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http://www.elis.go.kr))에 접속해 주세요.
- ▶ 검색창에 '00시 공영장례', '00시 무연고'와 같이 원하는 조례명을 검색해 주세요.
- ▶ 검색 결과로 제시된 것들 중, 동일한 조례명을 클릭해 주세요.



## 지자체 문의 및 각 서식 확인 방법

[목록닫기] [연혁] [제·개정이유] [2단비교] [신구비교] [유사법규비교] [관련 법령예고] [용어사전] [주소복사] [본문내검색] [저장] [인쇄]

###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2025-03-12 조례 제 8369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인화번호 : 031

- ▶ QR 혹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 후 조례명 검색 후 접속
- ▶ 조례명 오른쪽 하단의 관리책임부서명, 전화번호 확인

### 서식 [일괄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 ▶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례 하단부에 각 양식을 업로드 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명확한 건  
각 지자체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OUL**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3호,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및 조사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에는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4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업무 대행을 맡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의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로서,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관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례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시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장례비용을 청구한 경우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사망한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특수청소비용

(동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임차계약을 맺은  
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 지급)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에는 사별자의 애도,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를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장례수행자는 장례절차를 완료한 후 장례처리 결과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원 업무를 대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사망자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에는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3호,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및 조사한 후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려환자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에는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장례지원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에 해당되어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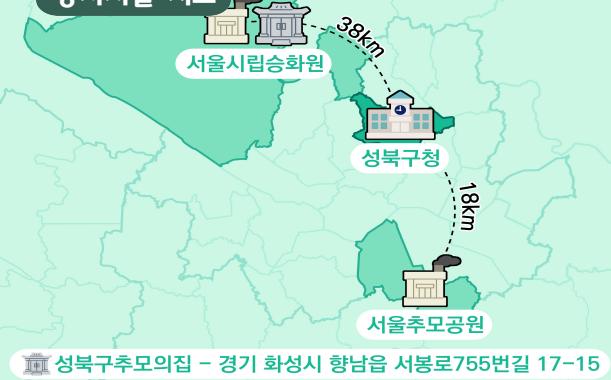
1.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대상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그 대상을 결정한다.
2. 지원대상 제2호, 제3호,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및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서울시립승화원

강북구청

서울추모공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봉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중 도봉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인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 모두가 다음에 해당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미성년자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운구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내용에 대한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발견 또는 조사되면 연고자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영장례 대상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3호에 따른 공영장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영장례 지원 적정성 및 장례계획을 확인·조사한 후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의 형태를 가진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인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으로서 연고자가 장례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 하여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여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때에는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구민의 공영장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3호,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자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의 내용, 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4호 해당하는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한 사망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의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에는 사별자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4호,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의 능력이 없는 경우
3.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 그리고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4.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2. 지원대상 제3호,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 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저소득층 주민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고독사한 경우
  -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의 구속 ·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는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4. 지원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망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에는 사별자의 애도 그리고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연고자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 제1호에 따른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
-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직접 장례를 시행하거나, 업무를 대행할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내에서 사망한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3호, 제4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및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인 무연고 사망자 등이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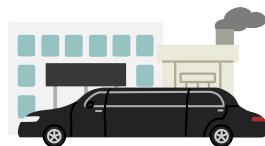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안실 안치료



봉안대상자의 공고 비용



수급자인 무연고 사망자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비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지원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원의 내용, 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자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장례업체·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 제7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업무 대행을 맡긴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



## 지원대상

-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장소와 관계없이 장례지원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가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3호, 제5호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 확인 및 조사 후 구청장이 결정 한다.

## 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의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공영장례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의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서초구청

서울주모공원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1.9km

1.9km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2호,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자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
-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2조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지원대상 제5호의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강동구추모의집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 인천



INCHEON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3. 시장은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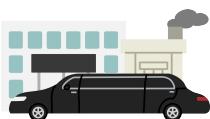


## 지원대상

- 강화군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7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타 기관 지원으로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원 제외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봉안비용  
무연고 사망자 지원

-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지원대상 제1호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하단 QR코드 참고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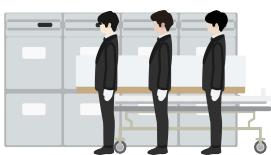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공영장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필요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



장례업체 · 비영리법인 · 단체  
등과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2.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영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장례업체·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례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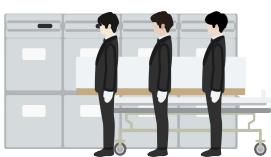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 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다음 항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화장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 지원신청 및 결정

1.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자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치료, 입관비, 운구비,  
화장비용 등 장제비



사용료, 제사상 및 식사비,  
장례용품 등 장례비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의 지원

2.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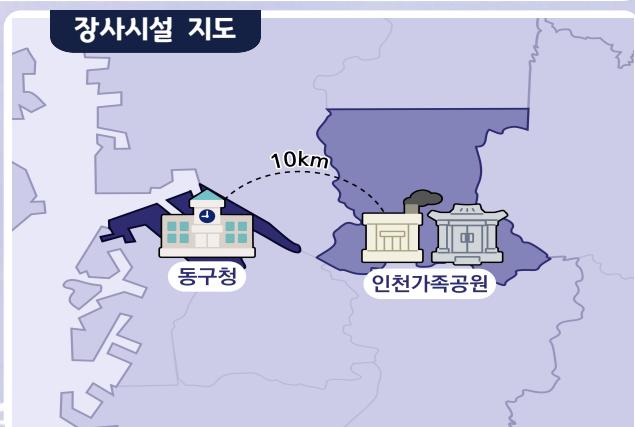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은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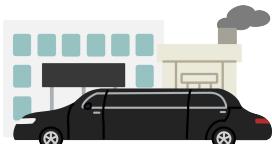
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다.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비 등



안치료, 운구차량,  
화장비용 등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2.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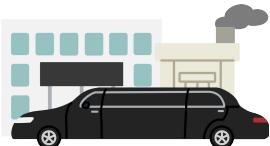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장례업체·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1.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장례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례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 · 경제적 ·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 기피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등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2.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례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은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장례를 처리한 후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업무를 대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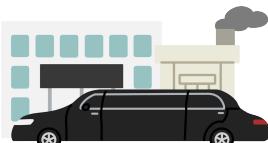
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 · 기피하는 경우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영구차량,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2.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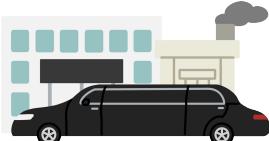
1. 구청장이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추모 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2.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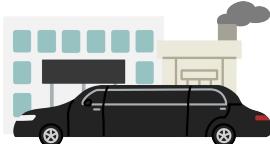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의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사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장례업체·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1.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장례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GYEONGGI

---

#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75세 이상인 사람
-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군수·마을공동체·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권한의 위임

- 도지사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공영장례지원 권한을 위임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시장은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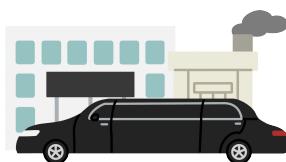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대행기관이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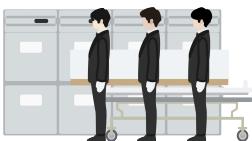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
-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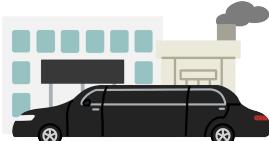
-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은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액 또는 지원 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차량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장례업체 ·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
  - 연고자가 있어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내용

-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화장비용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자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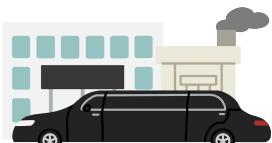
- 시장은 화성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해 다음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시장은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법령, 다른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 등의 장례비용이 본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무연고시신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례비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시신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의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신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의 용품 및 비용과 같다.



수의, 관,  
유분함 등  
장례용품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노무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2.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기관·단체 등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청인 중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공영장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의 장례업체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 등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이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 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시장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고독사로서 1항 또는 2항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장례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 장례지원금액은 해당 법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에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물품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 제4조(지원방법)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 장례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 아동학대사망자로 연고자의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의 인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은 장례절차 후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파주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7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화장 장례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봉안  
(무연고 사망자 해당)

- 시장은 위의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장례지원 신청인이 없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위의 항목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등 다양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 대상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관내에 안치된 저소득층이 아닌 사망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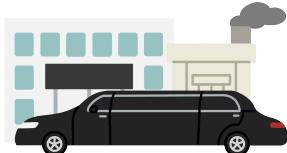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 시장은 화장문화 장례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장례지원금액은 위 내용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시의 예산 범위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한 대행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혹은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김포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이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다음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75세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봉안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의 연고자 등은 시장에게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에 따라 장례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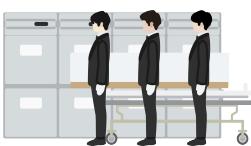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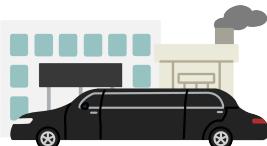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그 밖의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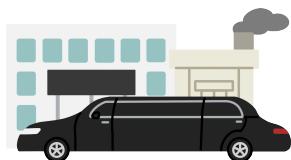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광명시 흘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지원내용

1.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공영장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공영장례 시 매장은 하지 않는다.

3. 공영장례 소요비용은 지원내용 제1호에 맞춰 지원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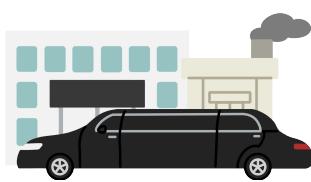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대행기관이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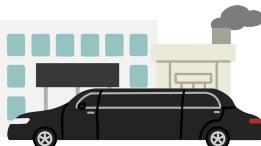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구체적 사항은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다.
- 시장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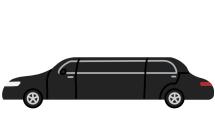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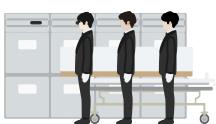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장례지원 금액은 위의 사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은 장례 절차 후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의 항목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 미성년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7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시장은 간소한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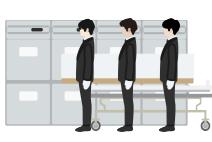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망자 이송, 검안,  
안치 및 화장비용



봉안  
(무연고 사망자 해당)

- 장례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20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업체 등은 무연고 확인 요청을 하거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작은 장례 확산을 위한 장례 필수물품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2. 장례지원금액은 지원내용 제1호의 비용으로 하되, 타 법률 지원액을 포함하여 250만 원 이내로 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두로 신청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대행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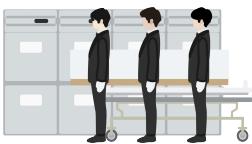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이 원칙이며,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화장비용



특수청소비용  
(임차계약을 맺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

-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신청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위 내용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포천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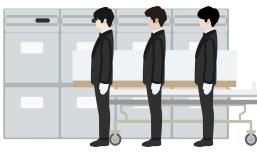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또한, 화장 장례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3. 시장은 물품 지원 이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4.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사망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무연고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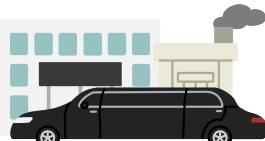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시장은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액 또는 지원 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장례업체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시장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여주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사망 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7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봉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해당



특수청소비용  
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 지급

-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장례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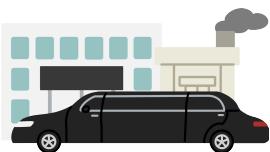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수의, 관,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시장은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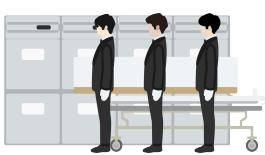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시장이 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장례업체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지원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군수는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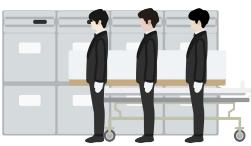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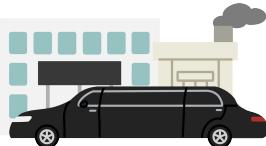
- 군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권한의 위임

-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의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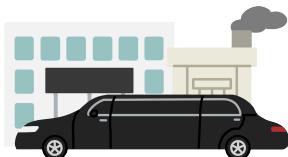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신청 및 결정

-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대행기관이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군수는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권한의 위임

-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 장사시설 지도



# 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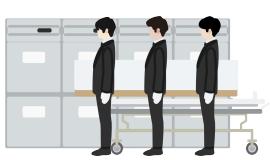
- 군수는 연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2.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해당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본 저작물은 2025년 09월 기준,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각 조례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2025년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를 참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SEOUL  
INCHEON  
GYEONGGI**



한국장례문화진흥원  
Korea Funeral Culture & Policy Institute